

[전직금지분쟁] 자동차용 페인트회사 vs 퇴직 연구원 사안 - 전직금지약정 유효, 위반 시

손해배상액 예정 조항 유효 BUT 구체적 사안에서 손해배상액 감액 결정: 수원지방법원

2018. 5. 1. 선고 2017가단547513 판결



사안의 개요

2년 전직금지약정 및 연봉 2배의 손해배상 조항

9. 본인은 위 각 서약사항 위반시,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민형사상의 책임, 민법상의 채무 불이행 또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형법상의 업무상배임 등의 죄책, 기타 제반 민,형사상의 책임을 지는 것은 물론, 지급된 연봉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체없이 배상한다.

[영업비밀보호서약서]

피고는 2016. 11. 20.자로 원고 회사를 퇴직함에 있어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1. 피고는 원고 회사 퇴직일로부터 향후 2년간 원고 회사의 사전 서면동의 없이 원고 회사와 동종업계 또는 경쟁업체에 근무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판결요지 - 전직금지약정 유효 및 연봉 2배의 손해배상액 예정 조항 유효

가. 이 사건 전직금지약정 위반에 따른 배상 조항의 법적 성격

이 사건에서 원고 회사는 '피고의 이 사건 전직금지약정 위반으로 인한 그 약정에서 예정한 금액의 청구'를 할 수 있을 뿐 달리 '이 사건 전직금지약정 위반을 이유로 한 손해배상청구'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님은 청구원인 기재상 명백하다. 이 사건 전직금지약정에서 이를 위반하는 경우 '연봉의 2배'를 피고가 원고 회사에 지급하기로 한 약정은 민법 제398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판단된다.

나. 위와 같이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보는 이상 원고 회사에 현실적인 손해가 발생하였는지 여부는 손해배상예정액 지급의무의 발생요건은 아니다(대법원 2000. 12. 8. 선고 2000다50350호 참조).

판결요지 - 손해배상액 감액 결정

사용자 회사의 청구액 - 5천3백만원 vs 법원 판결금액 - 1천5백만원, 약 28% 인정, 72%

감액

2)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가 취업 후 약 3년간 원고 회사의 동료 관련 업무에 종사해 왔으므로 이와 관계없는 다른 업체로 전직하는 것이 사실상 어려운 점, 원고 회사가 피고에게 전직금지에 대한 별도의 대가를 지급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 점, 원고 회사의 보호 가치 있는 이익을 고려하더라도 이 사건 전직금지 약정에서 정한 전직금지 기간은 피고에게 과도한 제한을 가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실제 앞서 본 경업금지가처분 사건에서는 그 금지기간을 1년으로 제한하는 취지의 결정을 하였다), 기타 피고가 원고 회사 재직시 담당하였던 업무 및 직급, 이 사건 전직금지 약정에 따른 경업금지가처분 사건의 진행 경과, 원고 회사의 실제 손해액을 산정할 만한 자료는 변론에서 현출되지 아니한 점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연봉의 2배'로 약정한 이 사건 손해배상예정액은 부당하게 과다하다고 보이므로 이를 감액하여 1,500만 원으로 감액한다.

첨부: 수원지방법원 2018. 5. 1. 선고 2017가단547513 판결

경업금지, 전직금지, 영업금지, 영업비밀, 형사고소, 민사소송, A~Z 수행경력

T. 02-591-0657 E. kkh@kasanlaw.com H. www.kasanlaw.com